

「2025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 공고

녹색 혁신기술의 개발·보급 촉진 및 기업의 환경경영을 지원하고자 「2025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2.20.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사업 목적

- 녹색 혁신기술 보유 공급기업과 기술 수요기관 간 매칭을 통한 녹색기술의 개발·보급 촉진 및 기업의 환경경영 지원
 - (공급기업) 현장 실증데이터(Track Record) 확보로 시장판로 확대
 - (수요기관) 녹색 혁신 기술·설비 적용으로 기관의 환경현안 해결

2.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녹색 혁신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관련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수행기관)
 - (공급기업)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 ① 특허권이 확보된 기술에 대한 권리(법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명의 특허 신청 불가), ② 녹색인증기술 ③ 환경신기술 중 하나를 소유하며 업력 2년 이상인 기업
 - (수요기관) 실증장소를 제공하는 대·중소·중견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 ※ 컨소시엄은 1개의 수요기관과 1개 또는 복수의 공급기업으로 구성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수요기관 내 혁신설비를 제작·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지원분야) ① 청정대기, ② 기후테크(탄소포집·활용 등), ③ 스마트물, ④ 자원순환, ⑤ 환경AI·ICT, ⑥ 바이오가스 등 환경 소분야 [덧붙임1 참조]
- (지원기간) 협약일 ~ 2025.11.30.
- (지원규모) 컨소시엄당 최대 10억원 이내(17개 내외)

구분	국고보조금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70% 이하	30% 이상
중견기업	50% 이하	50% 이상

※ 공급기업 규모에 따라 비율 차등 적용, 민간부담금은 현금으로만 구성 가능하며 민간 부담금 세부 부담내역은 사업 신청 전 공급기업 및 수요기관 간 사전 조율 후 결정

3. 공고 및 접수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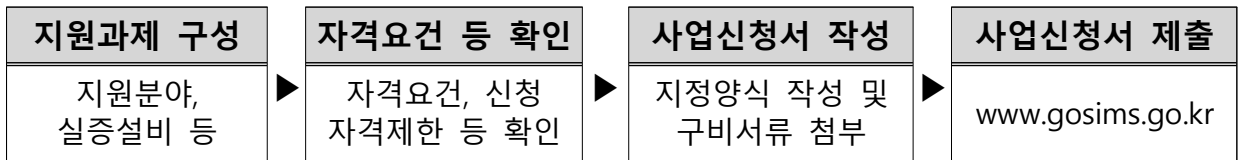
○ (공고기간) 2024. 12. 20.(금) ~ 2025. 02. 14.(금) 까지

○ (접수기간) 2025. 01. 15.(수) ~ 2025. 02. 14.(금) 까지

※ 접수는 e나라도움을 통해서 하여야 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시 불인정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사업공고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시스템 가입 및 사업신청 방법 등은 e나라도움 사용자매뉴얼 참조(e나라도움소개→사용자매뉴얼)

※ 공급기업 및 수요기관은 한 개의 과제에만 신청 가능

[e나라도움시스템 사업신청 절차]

① e나라도움 회원가입 후 [주관기관 아이디로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관리] ⇨ ⑤ 공모현황 ⇨

⑥ 공모명 선택(2025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후 [신청서 작성] 클릭

⇨ e나라도움에 작성 및 첨부서류(사업신청서 등) 파일 첨부 ⇨ [신청서제출] 클릭

※ (주의사항) 주관기관이 신청기관 정보내역 작성 시 "권소사업자 추가"를 클릭하여 주관기관 외 공급기업 및 수요기관 정보를 필히 등록하여야 함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1식 [덧붙임2 참조]

※ 한국환경공단 또는 e나라도움의 사업 공고문에서 제공하는 압축파일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양식의 임의변경 시 탈락처리

※ 본사업 신청 관련 제출서류(1~20번) 목록 참조(필수서류 누락 시 미제출 처리 예정)

☞ 1번(사업신청서), 2번(사업계획서, 과제카드)의 별첨(엑셀파일) 작성·제출 필수

○ (참고사항) 제출서류 작성 시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에서 사업계획서 샘플 및 우수사례, 자주하는 질문/답변 참조

※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접속 후, 국민참여→동반성장→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선택

☞ <https://www.keco.or.kr/web/lay1/S1T268C1166/contents.do>

5. 지원자격

- **(설비 공급기업)** 환경분야 혁신설비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구성하여야 함
 - ※ 설비 공급기업이 복수인 경우 각 기업별 환경기술 권리 보유 등 지원자격을 각자 만족하여야 하고, 해당 기술·설비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를 보유(공고일 기준)하여야 하고, 설비 공급기업은 **설비 수요기관이 될 수 없음**
 - ※ ① 특허권이 확보된 기술에 대한 권리(법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명의 특허 신청 불가)
 - ② 녹색인증기술 ③ 환경신기술 中 1개 이상 필수
 - 설비 공급기업은 주관기관으로서 **수행기관을 대표해** 사업을 신청하며 주관기관 내 **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 **(설비 수요기관)** 환경설비 도입을 목적으로 **현장실증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1개 또는 복수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관리지침 제13조(신청자격의 제한)에 따라 다음의 하나에 해당(공고일 기준)하는 참여기관에 대하여 **본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참여제한 기준]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관리지침 제29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보조금법을 위반하여 수행 배제 기간 중인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text{자본잠식률(\%)} = [(\text{자본금} - \text{자기자본}) / \text{자본금}] \times 100$$

- 최근 1년 이내 환경 관련 법령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최근 2년 이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 불이행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최근 3년 이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회 이상 고발 또는 3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사업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공표 목록에 포함된 사업장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인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속한 사업장 및 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사업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공표 목록에 포함된 사업장인 경우
-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해당 과제에 한함)
- 사업화(매출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 소송 등으로 인한 가압류가 진행된 사업장인 경우

6.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생협력 실증프로그램 관리지침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 및 규정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기업에게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비목 중 유형자산 및 건설비에 대해 계약건수별 본 견적서 1개, 비교견적서 2개 이상을 제출하되, 비교견적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와 함께 증빙서류(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제출
- **(사전 계약발주 및 체결 불가)** 협약 체결 이전에 계약 발주 또는 설비 제조업체(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해당 선정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및 보조금 환수
-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협약 체결 시, 협약기간에 가산기간(3개월)을 포함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보험료 기업 자부담)
- **(원가계산서 제출)** 협약 체결 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 제출 필요(소요 비용 기업 자부담)
- **(계약 체결 규정 준수)**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2조 및 제23조를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중요재산 등록)**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취득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설비 처분제한)**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에 성과물을 양도,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35조를 준용하여 적용
- **(사후관리)** 사업종료 후 5년간 사업효과보고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함
- **(컨소시엄)** 설비수요기관과 설비공급기업 간 발생할 수 있는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 도입 기술·설비의 설치·사용 등에 있어 수행기관과 계약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간의 일체의 분쟁, 도입 기술·설비의 설치·구축·운영 등의 안전성·신뢰성 등 소비자 관련 사전·사후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정부 및 한국환경공단(전담기관)과 무관하고, 정부 및 한국환경공단(전담기관)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
- **(컨설팅 기관)** 주관기관은 컨설팅기관을 지정·위탁하여 사업과제 관련 서류의 작성 등 제반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다만, 컨설팅 비용은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백만원 이내로 총사업비에 계상가능)
 - 동 사업의 국고보조금 이외에 주관기관의 컨설팅기관 지정·위탁 및 컨설팅 추진 결과, 도입 기술·설비의 설치·구축 등 안전성·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민간부담금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정부 및 한국환경공단(전담기관)과 무관하고, 정부 및 한국환경공단(전담기관)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 **(인허가 사항)** 지원과제 추진에 있어 행정 인·허가사항(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으로 인한 설치 불가나 민원사항(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 및 기타사항(사업포기 등) 등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해결 불가능할 경우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사업관리)**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기간 동안 관리지침에 따라야 하며, 주관기관은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불이행에 따른 별도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7. 추진 절차

<p>사전 공고 (‘24.10~1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환경공단 ↔ 설비공급기업, 설비수요기관 ■ (사전 신청) 공급·수요기관 개별 모집(공단 이메일 접수) ■ (사전컨설팅 신청) 컨소시엄(공급+수요) 모집(공단 이메일 접수)
<p>공급-수요 매칭지원 (‘24.12월~‘25.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환경공단 ↔ 설비공급기업, 설비수요기관, 컨소시엄 ■ (매칭지원) 사전신청 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교류의 장 마련 ■ (사전컨설팅) 사업계획 구성 및 제출서류 준비방법 등 안내 <p>① (On-Line 매칭) 온라인 매칭지원시스템(https://bizmatch.kr/KEC) * 사전신청 기업 정보 상호 검색 가능(공급-보유기술, 수요-요구설비)</p> <p>② (Off-Line 매칭) 매칭데이 행사(사업설명회 개최, 대면교류)</p>
<p>본사업 공고 (‘24.12~‘25.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환경공단 ↔ 수행기관 ■ (본사업 신청) 수행기관(공급+수요) 모집(e나라도움 접수)
<p>지원과제 선정 (‘25.2~4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환경공단, 평가위원회 ■ 지원자격 사전검토, 서면평가, 현장확인, 최종선정평가
<p>협약체결 (5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환경공단 ↔ 수행기관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서류 제출, 선금 지급(국고보조금 70%)
<p>사업수행 (5~1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 ■ 혁신설비 제작·설치 및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 시 e나라도움시스템 및 조달청 나라장터(계약) 이용 필수
<p>진도관리 (6~1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환경공단 ↔ 수행기관 ■ 과제 수행현황 월간보고서 제출(매월) ■ 설치현황 현장확인, 추진진도에 따라 잔금 지급(국고보조금 30%)
<p>보고서 제출 (‘25.12월~‘26.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 ■ 사업결과보고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p>최종평가 및 정산 (‘26.1~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최종 평가위원회 ■ 사업결과 최종평가, 정산보고서 검토·확정
<p>사후관리 (5년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환경공단 ↔ 주관기관 ■ 사업 효과 보고서 제출(실증 운영자료 추가 제출 필요)

※ 세부내용 및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선정 및 평가

< 지원 대상 선정 절차 >

공고·접수	사전검토	서면평가	현장조사	선정평가	협약체결
신청서 제출	자격요건 검토	서류평가 (60점 미만 탈락)	수요기관 현장확인	발표평가 (60점 미만 탈락)	추진계획 보완 및 협약
수행기관	공단	평가위원회	공단	평가위원회	공단-수행기관

- **(사전검토)** 참여제한(유사과제 해당여부, 휴·폐업 기업 등) 등 사전검토를 통한 부적합기관 탈락 조치 및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보완 요청
- **(서면평가)** 평가위원회에서 사업목적 부합성, 사업 적정성 및 기업역량, 사업예산 합리성,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 실시
 - ※ 서면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당해연도 사업 계획 물량의 2배수 범위의 신청과제에 대하여 선정평가 대상 선정 및 현장 조사 등을 실시
- **(현장조사)**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평가 대상 기업 현장조사 실시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에서 사업목적 부합성, 과제수행체계 및 역량, 사업내용, 기술 혁신성,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 실시
 - ※ 선정평가 시 수행책임자가 발표 및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급기업과 수요기관 각각 담당자 1인 필수 참석[과제별 최대 4명(수행기관 소속) 참석 가능]
 - ※ 지원과제 선정 시 해당 기술에 대한 공급기업 자체 개발 여부를 평가하고 우대 반영

< 서면 및 선정평가 평가항목 >

구분	평가항목	비고
서면평가 (1단계)	■ 사업목적 부합성(부합성, 달성도, 적용기술 혁신성)	40점
	■ 사업 적정성 및 기업역량(목표 적절성, 재무현황)	25점
	■ 사업예산 합리성(예산 적정성, 사업비 편성 타당성)	15점
	■ 기대효과(사업성, 환경.사회적 효과성)	20점
선정평가 (2단계)	■ 사업목적 부합성(사업대상 관련성, 혁신기술 여부 등)	30점
	■ 과제수행체계 및 역량(수행체계 적절성, 경영역량 등)	20점
	■ 사업내용(사업계획서 완성도, 사업비 산정 적정성)	15점
	■ 기술 혁신성(처리성능, 경제성, 유지관리 편의성)	25점
	■ 기대효과(사업성, 환경.사회적 효과성)	10점

※ 서면평가종합점수 = 서면평가점수 + 가.감점 [덧붙임3 참조]

※ 최종종합평가점수* = (서면평가종합점수 × 0.3) + (선정평가점수 × 0.7) [덧붙임3 참조]

*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당해 연도 사업비를 고려해 “지원과제”와 “후보과제” 분류

9. 협약체결

- 최종 선정 후, 사업계획서, 원가계산서 등 **협약체결 관련 서류**가 구비 완료된 수행기관에 한하여 **협약 진행**
 -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은 조정된 국고보조금 및 사업비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 작성**하여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에 제출
 - ※ 최종 선정된 지원기업의 사업비는 협약체결 전(前),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최종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기업에서 부담
- 사업계획서 수정이 완료된 주관기관은 협약서를 작성, 지급보증보험증권, 신규개설 통장 사본, 민간부담금 부담 약약서 및 민간부담금 입금 확인증,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
 - ※ 협약기간에 가산기간(3개월)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보험료 기업 자부담 필요, 제출기한 내 협약체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 취소 조치)
- 협약에 관련된 모든 증빙과 민간부담금 입금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협약 체결**
 - ※ 국고보조금은 민간부담금이 선 입금(선금 70%, 잔금 30%) 된 후 지급

10. 진도관리

-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은 수행기관 **진도관리(월간보고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행실태 및 사업 계속 여부 결정**
 - ※ 진도관리 결과 “계속”인 경우에만 잔금(30%)을 추진 진도에 따라 차등 지급

11. 결과보고 및 평가

- **(결과보고)**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목표 달성 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에 제출
- **(결과평가)**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은 사업결과보고서가 모두 제출된 후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결과평가 실시
 - 결과평가 결과 평점 60점 이상 “성공”, 60점 미만 “실패”로 분류
 - ※ “실패” 판정된 과제 및 사업결과보고서 미제출 과제는 관리지침에 따라 참여제한 및 국고보조금 환수 등 제재조치 진행

12. 사업비 지급, 계상, 관리 및 사용

- **(지급)** 국고보조금 7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진도관리를 통해 사업수행의 계속여부가 결정된 수행기관에 한하여 30% 잔액을 추진 진도에 따라 차등 지급
- **(계상·관리·사용)**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업비 계상 후 국고보조금 및 민간부담금에 대하여 신규 계좌를 개설·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 계좌와 연결된 보조금시스템을 사용하여 집행 [덧붙임4 참조]
- **(정산)** 검증기관(회계법인)의 검증이 완료된 정산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 ※ 국고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지원기업은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하며, 국고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위의 감사인과 별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위반사업 등에 대한 제재)** 수행기관이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음

13. 성과활용

- **(보조사업실적보고서)**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 **(사후관리)** 사업 종료 후 5년간 사업효과보고서를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에 제출
 - 사후관리 수행 다음연도의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책임자 변경 등 사업내용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성과활용)** 지원과제의 성과물은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이 본 사업의 홍보 및 우수사례 선정, 선도모델 구축 등에 활용할 수 있음

14. 문의처

-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K-eco연구원 ESG기업지원부
 - (TEL) 032-590-4813, 4817 (E-mail) kecomicro@keco.or.kr
- **(e나라도움)** 회원가입, 사업신청, 시스템 매뉴얼 안내 등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고객센터 (TEL) 1670-9595
- **(조달청)** 기업등록, 계약체결방법 안내 등
 - 국고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고객센터 (TEL) 1588-0800

1. 지원내용

분야	세부 분야
청정대기	측정·감시(모니터링, 누출 조기감지), 악취제거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집진, 흡착, 세정, 탈취) 등
기후테크 (탄소포집·활용 등)	CCUS(탄소 포집·저장·이용), 폐열 및 폐에너지 이용·회수, 저탄소 공정, 탄소저감 설비 등
스마트물	지능형 물관리(자동측정·모니터링), 물 재이용(하폐수 순환이용), 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 탄소 저발생 수처리(에너지 절감) 등
자원순환 (공정부산물 등)	폐기물 저감(압축, 탈수 등), 재사용(폐수, 폐열·폐가스, 순환골재), 재제조(공정부산물 활용), 재활용·회수(물질재활용, 에너지회수), 가연성자원화(SRF, 열분해), 유기성자원화(사료퇴비, 바이오가스), 배터리 생산·재활용, 탈플라스틱 등
환경AI·ICT	IoT 모니터링(센서활용 자동측정), Big Data(빅데이터) 분석·관리, AI(인공지능) 제어시스템 구축 등
바이오가스	혐기성 소화, 가스 활용(정제, 발전), 식품폐수처리, 소화 잔재물 재활용 등

2. 사업비 구성비율

공급기업	총사업비 구성	비율(%)
중소기업	국고보조금	총사업비의 70% 이하
	민간부담금	총사업비의 30% 이상
중견기업	국고보조금	총사업비의 50% 이하
	민간부담금	총사업비의 50% 이상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구분	순번	첨부서류			수량 (부)	비고
공단 양식 작성 서류	1	수행기관	[별지2] 사업 신청서		1	※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과제 카드(엑셀파일, 별첨) 작성·제출
	2	수행기관	사업계획서		1	
	3	공통	[별첨1]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1	
	4	공통	[별첨2]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원본	1	
	5	공통	[별첨3] 신청기업 자기진단서	원본	1	
	6	공통	[별첨4] 안전보건 서약서 및 안전보건계획서	원본	1	※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시 신청 기업 자체 양식 사용 가능
구비 서류	7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1	
	8	공통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	
	9	공통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	※ 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 증명서 원본 제출
	10	공통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원본	1	
	11	공통	최근 2개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	1	
	12	공통	가점 현황 증빙자료	사본	1	※ 해당시 제출
	13	공급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원본	1	
	14	공급기업	신청 기술 관련 증빙자료	사본	1	※ 특허증, 시험성적서 성능확인서 등
	15	공급기업	설비의 사양파악 자료	사본	1	※ 카탈로그 등
	16	공급기업	설비의 주요구성 및 설계도, 조감도 등	-	1	
	17	수요기관	기존 시설의 주요 구성도	-	1	
	18	수요기관	예상효과 산출근거 데이터 증빙자료	-	1	
	19	수행기관	사업비 사용계획 산출내역에 대한 견적서 등 근거자료	-	1	※ 자산취득비·시설비는 건당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 포함 ※ 일반용역비는 산출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포함
	20	수행기관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1	

가. 서면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사업목적 부합성 (40)	사업목적 부합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과제 추진배경 및 도입 필요성이 상생 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 추진 목적과 부합하는지 평가한다. - 동 프로그램으로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타 신청과제에 우선하여 추가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은지 평가한다.
	사업목적 달성도(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에서 설정한 목표가 본 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정도를 평가한다.
	사업 적용기술 혁신성(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기술의 우수성 및 차별성 등 기술 수준을 평가한다. - 적용 기술의 공급기업 자체 개발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성과 확대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사업적정성 및 기업역량 (25)	목표·계획 적절성 및 체계성(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개선 효과 등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에 대한 적절성 및 체계성을 평가한다. - 사업계획 제출 시 제시된 과제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기업의 재무현황(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신용도, 현금흐름등급 및 재무재표를 검토하여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평가한다.
사업예산 합리성 (15)	사업예산 적정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사업비 중 혁신설비 설치 비용의 비중과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산출이 타당한지를 평가한다. - 제출받은 최근 5년간의 보조사업 수혜이력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편중 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비편성 타당성(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계상 시 사업관리지침의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기대효과 (20)	사업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사업화 목표 및 판로 전망을 평가하여 사업화 기대효과를 평가한다.
	환경·사회적 효과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으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저감 및 비용절감 등 환경적·사회적 기대효과를 평가한다.

나. 선정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사업목적 부합성 (30)	사업대상 관련성(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 설비 설치 시 환경오염물질 및 탄소저감 등 환경개선 효과성을 평가한다. - 설비가 설치되는 장소가 본 협력사업과 기술 실증에 적합한 현장인지 평가한다. - 현장적용 실적 및 기 매출액 등 사업화 추진 현황 등 사업화 진행여부로 동 프로그램(사업)을 통한 현장실증 필요성을 평가한다.
	혁신 기술 여부(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상용화 기술·설비와 차이점 및 우수성을 평가한다. - 사업 전·후 혁신기술이 적용된 설비 효율이 향상 가능성을 평가한다.
과제수행체계 및 역량 (20)	과제수행체계 적절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공급기업 및 설비수요기관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가 적절한지 평가한다.
	과제수행 경영역량(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여 사업내용을 구성하였는지 평가한다. - 재무현황, 생산능력, 기술개발능력 등 인적·물적으로 원활히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평가한다.
사업내용 (15)	사업계획서의 완성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내용을 반영하여 현장실증을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설정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용의 적정성 · 사업내용의 구체성, 실효성 ·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적정성 등
	사업비 산정 적정성(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하는 예산 대비 산출효과의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한다.
기술 혁신성 (25)	처리성능(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기술의 처리효율·시간 등 성능의 우수성과 사후 성능·품질의 재현을 위한 완성도를 평가한다.
	경제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기술 대비 시설의 설치비용, 유지관리비의 절감 등 경제성을 평가한다.
	유지관리 편의성(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성능 구현을 위한 운전·제어, 작업요원의 숙련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을 평가한다 - 과제 추진 및 설비의 운영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기대효과 (10)	사업성(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사업화 목표 및 추진계획등으로 판로 전망을 평가한다.
	환경·사회적 효과성(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설비의 사업화시 환경·사회적 예상 효과를 평가한다.

다. 가점 기준

순번	항 목	가점	비고
1	(수요기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 관리 대상 사업장 - 상기 법령 적용 시기가 지침 제9조에 따른 사업 공고일 기준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종 추가 1점 부여	1 (최대 2점)	증빙 제출
2	(공급기업)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및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 기업	1.5	증빙제출
3	(공급기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 수행 과제 (최근 5년 이내) / 해당기술에 한함 (사업화 지원 내용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개발촉진” 사업만 해당)	1.5	증빙제출
4	(공급기업)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공과제’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최근 5년 이내) / 해당기술에 한함	1.5	증빙제출
5	(공급기업) 환경신기술 인증 및 환경기술 검증기업 (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및 환경부고시 「환경신기술 인증 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 해당기술에 한함	1	증빙제출
6	(공급기업) 환경성적표지 인증, 환경표지인증, 녹색인증 기업 (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및 제18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 해당기술에 한함	1	증빙제출
7	(공통) 환경경영 우수기업(평가등급 A~AAA) *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	1	증빙제출
8	(공통)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지정서 지정기간 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	1	증빙제출
9	(공통) 사업 사전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한 수요기관, 공급기업 (개별 적용)	0.5 (최대 1점)	증빙제출

※ 총 가점은 서면평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최대 8점 적용하며, 동일항목 중복 불가

라. 감점 기준

항 목	감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 프로그램(사업)의 지원과제로 선정된 이후 협약 중지(협약 정식 체결 전 포함) 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5점

구분		사용 용도	계상 및 산정기준
비목	세목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1. 실증화 대상 설비를 포함한 공작물, 대규모 기계, 기구 등의 물품 구입비	1. 실소요 경비를 계상 2. 구입한 장비의 설치 시 소요되는 금액을 내역에 포함 - 자체 제작 시 공급기업의 노임비 및 제경비 제외
건설비	시설비	1. 실증화 대상 설비 외 잡자재를 포함하여 공사성 비용으로 부대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	1. 제비율을 포함한 실소요 경비를 계상 2. 자재 및 운송·설치에 소요되는 세부 내역 포함 - 공급기업의 노무비 및 제경비 제외 ※ 설비공급기업 내부 보유 및 설비공급기업과 설비수요기관 간 장비, 시설, 공간에 대한 사용료 및 임차료는 산정 불가
운영비	일반 용역비	1.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1. 지원기업이 해당 컨설팅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산정 (최대 30백만원까지 가능) 2. 정산관련 검증용역비 (최대 2백만원까지 가능)
	일반수 용비	1. 측정분석비용	1. 실소요 경비를 계상 - 공인인증시험기관 및 전문기관 분석 수수료 ※ 분석 시약 및 키트, 분석기기 산정 불가

※ 사업과 직접 관련 비용만 산정 가능하며, 상기 제시된 사용 용도 외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불가

※ 미지원 항목 : 부가가치세, 기존시설 철거비, 조달수수료, 지급보증보험료 등